

주간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2013년 노동계를 돌아본다!

노동기본권 쟁취 등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하
이
슈
-
2
0
1
3
노
동
계
결
산



▲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6일(토)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공약 이행!'을 기조로 열렸으며,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과 12개 지방본부 조합 간부 400여 명 및 KT그룹사 등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참가했다.

2013년도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노동계는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꾸준히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눈에 띄는 점은, 노사분규나 파업보다는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논란, 시간제일자리,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자 개인의 삶에 더 치중한 이슈들이 부각됐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서, 기초연금법,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등은 양대 노총의 반발을 불러와, 노동계의 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2013년 노동계 주요 이슈를 ▲정년연장 법제화와 맞물린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논란

▲시간제일자리 등 정부고용정책 ▲대체휴일 반쪽 통과 ▲근로시간단축 연내처리 무산 ▲전교조, 공무원노조로 불거진 정부의 노동탄압 논란 등으로 압축해 본다.

1. 정년연장 법제화는 임금피크제 신호탄?



이미지출처: 한국경제

정년 60세 연장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사항으로 남겨 노사간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연착륙을 빌미로 통상임금 문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의 고용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임금피크제 지원을 강화한 고용연장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같은 방안으로 현재 12%인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내년 22%까지 끌어올리

겠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사항으로 뒀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금피크제를 장려하는 꼴이 돼버렸다.

노동계가 “정년연장은 환영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의미를 퇴화시킬뿐더러 업무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임금피크제로 경영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푸념이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이 늘어난 경우,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한다.

2. 통상임금 논란, 2013년 강타했다!



이미지출처: 파이낸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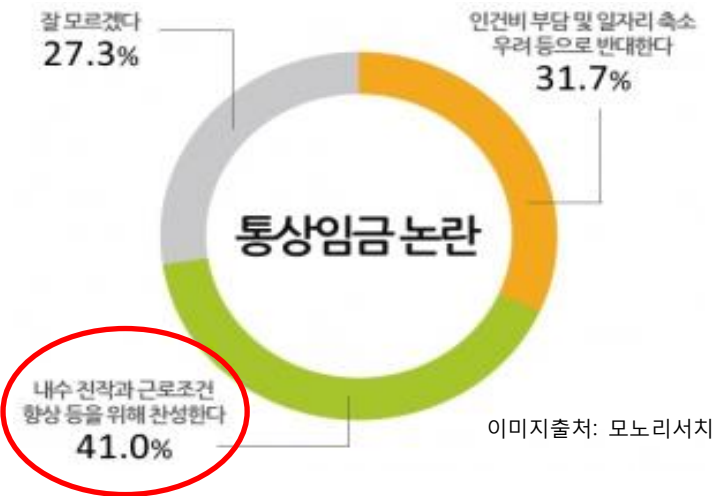
관련소송이 잇따르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2013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의

로 그 동안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심화됐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5월 방미 중 GM대우 회장과 나눈 박근혜 대통령의 친재계 발언까지 겹쳐 노동계는 들끓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까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줄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관련 소송이 제기된 곳이 무려 135곳이다(5월말 기준).



KT노동조합은 5월 30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된 이유는 상여금 규모가 커져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범위를 정부와 기업이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꼬집으며,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법치국가라면 대법원 판례를 먼저

존중하고, 기업의 단체협약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르면 연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로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효하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 중인 한국GM의 경우 지급해야 할 소급분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3.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확산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이 시간선택제(이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전체 채용인원의 5%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내년 고용시장에서는 국내 주요기업들이 1만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의 6%가 시간제 일자리로 할당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 뉴스사이즈



노동계는 6월 정부로드맵이 발표되자마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2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을 파기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시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역시 ‘양질’이 아닌, 기존 단기 시간제 노동자와 다를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11월 18일 한국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시급을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소득을 바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계를 위해 2개, 3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아르바이트 전선일 뿐이며, 더욱이 어떠한 권한과 소속감도 갖지 못하는 노동자는 일의 보람도 찾기 어렵다.

4. 대체휴일제 반쪽 통과

대체휴일제가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쉽게도 정부가 국회 여야 합의에서 상당히 후퇴한 수준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강행해 빈축을 샀다.

당초 모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쉬게 하자는 것이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취지였으나, ‘모든 휴일’이 아닌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이미지출처: 스포츠조선

정부는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은 11일(연평균 1.1일) 늘게 됐다. 당초 합의대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경우 19일(연 1.9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는 관공서 부문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 민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야 한다. 때문에 첫 적용되는 추석 연휴가 9월 7일~9일 연휴인데 첫 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빨간색, 민간달력은 검은색이 되는 꼴이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로 출발했었다. 반쪽짜리 통과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도 유감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근로시간단축법안 연내처리 무산

앞으로도 당분간은 최장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게 됐다.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단축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를 더하겠다”고 밝히며, 근로시간단축법 연내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당초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중 40시간 근로와 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로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을 허용해 왔던 것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였다.



근로시간단축법 연내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에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 행위이다. 한국노총은 “선거 때만 되면 각종 감언 이설로 노동자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모습”이라 비판하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6.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로 정부의 노조탄압 국제사회 도마위로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권침해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10월 24일, 노동계와 국가인권위,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됐다. 당시 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4년 동안 활동해온 6만 조직에 해직자 몇 사람 때문에 설립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과잉행정일뿐 아니라, 교직원노조에 대한 혐오증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립신고가 4차례나 반려된 공무원노조와 함께 전교조 대표는 12월 9일 파리로 출국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총회와 정례협의회에 참석, 한국정부의 노동권침해와 노조탄압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위해 ‘전교조 합법화와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12월 1일 전교조는 설립취소 등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했고, 내년 3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계도 정부도 복잡한 짐을 안고, 2014년을 맞게 됐다.

